

창원지방법원 2022. 2. 17 선고 2021나5662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2. 2. 17 선고 2021나56623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21. 5. 6 선고 2020가단109550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

원고보조참가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

피고, 항소인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공현필

변론종결 2022. 1. 21.

판결선고 2022. 2. 17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. 5. 6. 선고 2020가단109550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. 1. 24. 접수 제54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피고는 B의 별지 2 기재 건물 처분행위가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, 즉 별지 2 기재 건물의 처분행위 당시 B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E 토지, F 토지 및 별지 1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이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B은 그 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점, 피고는 2009. 11. 24.경 이전부터 B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2012. 12. 5.경 B에게서 차용금 3,5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나 그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인 2014. 12. 5.은 물론 2016년까지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B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던 점, 이에 따라 B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던 점 등에

비추어 보면, 피고가 주장한 사정과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고,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양상익, 판사 전보경, 판사 김희수

별지